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한국수출입은행 등의 공급망안정화기금 출연 근거 마련>
▣ 이종욱의원 · 신영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9895호)

2025. 9.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Ⅰ. 제안경위 ····· 1

Ⅱ. 제안이유 ····· 1

Ⅲ. 주요내용 ····· 2

Ⅳ. 참고사항 ····· 2

Ⅴ. 검토의견 ····· 3

1. 한국수출입은행 등의 공급망안정화기금 출연 근거 마련 (안 제39조) ····· 3

Ⅰ.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종욱의원·신영대의원 등 17인

나. 발 의 일 : 2025. 4. 16.

다. 회 부 일 : 2025. 4. 17.

Ⅱ. 제안이유

현재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질서의 구조적 변화 흐름에 직면하고 있으며 경제안보 중심의 공급망 재편은 지속·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또한, 자원이 부족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공급망 안정이 우리 경제와 민생을 위한 핵심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정부는 지난해 9월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공급망안정화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대출, 보증, 투자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기금의 재원이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의 발행 등 상환을 전제로 하는 자금으로 한정되어 있어 공급망 위기 예방·대응을 위한 긴요한 자금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출연 근거를 마련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 대출 시 이차보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공급망기금의 지원 효과성을 제고하고 공급망 위기 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출연 근거를 마련함(안 제39조 개정).

Ⅳ.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욱의원·신영대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8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Ⅴ. 검토의견

1. 한국수출입은행 등의 공급망안정화기금 출연 근거 마련 (안 제39조)

현 행	개 정 안
○ 공급망안정화기금 재원(제39조제1항) -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 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 지원을 받은 사업 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및 회사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 기금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 <신 설>	○ 공급망안정화기금 재원(제39조제1항) -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 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 지원을 받은 사업 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및 회사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 기금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 한국수출입은행 및 금융회사의 출연금

개정안은 한국수출입은행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1]가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출연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우리 기업의 공급망 위험 피해

---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사.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를 최소화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경제안보에 이바지하기 위한 기금임. 경제안보품목[2] 및 경제안보서비스[3]의 확보, 도입 및 공급,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내외 시설 투자 및 운영,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의 도입·개발·개량·상용화 등을 위한 사업을 대출, 보증, 출자 등의 방식으로 지원함.[4]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재원은 ①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②정부·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③지원을 받은 사업 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및 회사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④기금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임.[5]

---

2) 해외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또는 그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부품, 설비, 기기,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등 국민의 생활에 필수 불가결하거나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지정된 품목(「공급망안정화법」 제2조제4호)

3) 안정적인 제공 및 운영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제안보품목의 원활한 도입・생산과 유통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서비스 또는 기반시설로서 지정된 것(「공급망안정화법」 제2조제5호)

4) 「공급망안정화법」

제38조(공급망안정화기금의 설치) 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기업의 공급망 위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경제안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지원한다.

1. 경제안보품목등의 확보, 도입 및 공급
2.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내외 시설 투자 및 운영
3.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의 도입・개발・개량・상용화
4. 공급망 충격으로 인한 피해기업 긴급 지원
5. 그 밖에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분야로서 제43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가 인정하는 분야

5) 「공급망안정화법」

제39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2. 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업 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및 제41조제2항제2호의 회사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4. 기금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한국수출입은행은 자금지원(제41조에서 정한 대상 및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지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은 수출입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이며, 정부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고,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정부는 2024년에 원화기준 발행액 5조원 이내의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았고, 2025년에 원화기준 발행액 10조원 이내의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았음. 채권의 상환기간은 채권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임.

[연도별 채권발행 한도 규모 추산(실수요 기반)]

(단위 : 조원)

구 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기금지원 (A)	9.7	9.7	9.7	9.7	9.7	9.7
대출회수 (B)	0.3	4.9	7.3	8.1	8.7	9.3
채권상환 (C)	-	2.5	5.0	6.9	6.2	8.3
필요자금 (D)=(A)-(B)+(C)	9.4	7.3	7.4	8.5	7.2	8.7
유동성 대응 자금(E)	0.5	0.5	0.5	0.5	0.5	0.5
채권한도(F)=(D)+(E)	9.9	7.8	7.9	9.0	7.7	9.2

자료: 정부, 「2025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이에 따라 공급망안정화기금은 2024년 10월 기금채권의 첫 발행 이후 2025년 3월 기준 5차례 기금채권 발행을 통해, 총 7,400억원의 재

③ 정부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한국수출입은행이 제1항제2호에 따라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한국은행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원이 조성되었으며, 총 2조 519억원의 대출이 지원되었고 공급망 특화 사모펀드 조성을 위해 1,000억원 출자가 승인되었음. 정부는 향후 3년간 기금 공급규모를 30조원으로 확대할 예정임.[6)]

[공급망안정화기금 지원실적]

(단위 : 건, 억원)

구 분	지원사업	지원금액
□ 대 출	23	20,519
구매자금	19	14,859
시설자금	3	5,200
투자자금	1	460
□ 투 자(공급망안정화 펀드)	1	1,000
□ 합 계	24	21,519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25. 3.)

개정안은 수출입은행 및 금융기관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금의 대출금리를 낮추는 등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적극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기금의 상환의무가 없는 출연금을 통해 기금의 재원을 확충하려는 취지임.

공급망안정화기금과 유사하게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한국산업은행에 설치하는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의안번호 제2212395호)이 2025년 8월 27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는데, 동 개정안은 기금의 재원에 한국산업은행과 금융회사의 출연금을 포함시키고 있음. 반면, 기존

6)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2025~2027), 2024. 12. 29.

에 한국산업은행에 설치된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재원에 한국산업은행과 금융회사의 출연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7]

[정책금융기관에 설치된 기금 간 재원 비교]

	공급망안정화기금 (공급망안정화법)	첨단전략산업기금 (한국산업은행법)	기간산업안정기금 (한국산업은행법)
구분	현행법	시행 예정	현행법
재원	● 정부보증 기금채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 정부보증 기금채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 정부보증 기금채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 정부, 한국은행 차입금	● 정부, 한국은행 차입금	● 정부, 한국은행 차입금
	● 회수자금 ● 기금 운용수익 등	● 회수자금 ● 기금 운용수익 등	● 회수자금 ● 기금 운용수익 등
	-	● 한국산업은행 출연금 ● 산은외 금융회사 출연금	-
	-	● 정부 이외 출연금 및 기부금	-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상환을 전제로 하는 국가보증채로 재원을 조달하기 때문에 대출중심의 소극적 기금운용이 불가피한데,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을 하면 기금의 손실감내능력이 제고되어 적극적인 기금운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한국수출입은행도 동일한 의견임.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7)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초래된 기업운영의 불안정과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업에게 재난상황으로부터 야기된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 극복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2020년 5월 한국산업은행에 설치되었으며, 2025년 12월말까지 운용될 예정임.

첫째, 개정안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의 공급망안정화기금 출연이 가능해지면, 한국출입은행의 기금 출연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의 자체적인 정책금융 공급여력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국수출입은행은 국가전략사업의 수출진흥을 위해 대출·보증·보험 등의 공적지원을 수행하고 있는데,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자기자본비율(BIS 비율)[8]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5년 이후 매년 현금 또는 현물 출자를 받고 있음.[9]

[2005년 이후 한국수출입은행 출자 내역]

(단위 : 억원)

출자연도	현금출자	현물출자	
	금액	출자내역	현금환산액
2005	200	한국도로공사	5,000
2006	100	-	-
2007	30	-	-
2008	-	교보생명(2,887억원), 한국도로공사 (3,613억원)	6,500
2009	5,500	한국도로공사	5,000
2010	1,500	-	-
2011	1,000	-	
2012	-	한국도로공사(5000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3,793억원)	8,793
2013	1,000	-	
2014	1,300	한국토지주택공사	3,800
2015	1,300	한국토지주택공사	10,000
2016	10,200	-	-
2017	-	인천항만공사(1,250억원), 여수광양항만공사(1,250억원)	2,500
2019	562	-	-
2020	5,783	-	-
2021	2,988	-	-
2022	250	-	-

8) BIS비율은 BIS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값임
9) 수출입은행의 자체 BIS 비율 관리목표는 13.0%임

출자연도	현금출자	현물출자	
	금액	출자내역	현금환산액
2023	-	한국토지주택공사	20,000
2024	1,000	한국토지주택공사	20,000
2025	1,000	-	-

주) 2025년 현금 출자는 본예산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최근 한국수출입은행 BIS 비율 현황]

(단위 : 억원, %)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BIS자기자본(A)	169,727	175,021	200,102	235,796
위험가중자산(B)	1,144,007	1,308,231	1,382,604	1,535,974
BIS 비율(A/B)	14.84	13.38	14.47	15.35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을 하면, 한국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 지원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감소하여 자체적인 정책금융 공급규모가 감소하거나, 출연금만큼 감소한 수출입은행의 자금의 확충을 위한 정부의 출자 확대로 재정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이는 실질적으로 국가재정으로 수출입은행에 출자된 자금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되는 국가재정의 간접지출로 볼 수 있는데,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해서는 예결산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음.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기금은 국회의 심의를 받는 것이 적정한데, 개정안에 따르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대해 국가 재정이 간접적으로 투입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은 국회 심의를 받지 않으므로 국가 재정에 대한 국회의 통제가 약화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공급망안정화기금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급망안정화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 근거를 신설하면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국가재정법」상 기금[10]으로 개편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에 대해 국회 예결산 심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단, 정부가 직접 출연하여 기금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면 향후 국제분쟁 리스크가 생길 수 있으므로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안과 같이 수출입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출연하는 방안의 타당성도 있다고 보임. 이를 고려할 때,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보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구체적인 지원실적, 수출입은행 출연금을 활용한 지원내역 등을 포함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추진실적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과학기술기본법」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서도 국회에 추진실적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사례가 있음.[11]

---

10)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11)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의2(연차보고서의 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중장기투자전략 및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2. 제7조제5항에 따라 종합된 전년도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시행계획
2의2. 중장기투자전략의 주요 내용
2의3.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2의4. 제2호의3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3.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4. 제8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둘째, 동 개정안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업무 범위에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을 위한 자금의 출연을 추가하려는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신영대의원이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98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동 개정안의 심사경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5. 제4호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전년도 주요 추진실적
6. 제2호·제2호의3·제4호·제5호에 따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결과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사항으로 국회 보고가 필요한 사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7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등) ① 정부는 매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정책동향, 제14조제2항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매년 그 지역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정책동향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등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보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2. (생 략) <신 설> 3.·4. (생 략) ② ~ ④ (생 략)	제39조(기금의 재원) ① ----------. 1.·2. (현행과 같음) 3. 한국수출입은행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출연금 4.·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문 의 처
02)6788-5155